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출범과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

- 의료서비스 개방 논의와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홍정기

I. 도하 개발 아젠다 출범

1. 진행경과

가. WTO 회원국들이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최종 타결시

첫째,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고,
둘째,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있는 점,
셋째, UR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
넷째,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함을 느낌

나. 각료회의 결과

- 1998. 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
- 1999. 12.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출범 무산
- 2001. 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출범을 선언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도하개발 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명명

2. 각료회의 결과

가. 2001. 11. 9~14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는 『도하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

나. 2002년부터 3년간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을 진행, 2005.1.1까지 종료하기로 합의

-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함께 반덤핑 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 수립 문제를 다룰 것을 합의하고,
- 4개 싱가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에 대해서는 2003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고,
- 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연구분석작업을 계속한 후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함

다.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승인

-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 후 2002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 할 것인 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무역질서에 큰 파급효과 예상
- 중국 및 대만 포함시 WTO 총 회원국은 144개국.

3. 협상구조 및 전망

가. 협상방식

- 일괄타결양식 (Single Undertaking)
 -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처리
 - 조기합의사항은 조기시행가능

나. 협상기구

- 무역협상위원회 (TNC: Trade Negotiation Committee)
- 산하협상기구 설치

다. 협상기간: 3년간 (2005. 1. 1. 이전 종료)

- 농업, 서비스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협상 시간계획 설정
 - 서비스협상은 2002. 6. 30까지 양허요구서(Request List) 제출, 2003. 3. 31까지 양허안(Offer List) 제출
 - 농업협상은 2003. 3. 31까지 협상방식(Modalities) 결정
- WTO 제5차 각료회의 개최
 - 2003년 하반기 개최 전망(멕시코에서 개최예정)
 - 협상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 채택

라. 협상전망

- 신속한 협상진행
 - 폭넓은 협상의제에 비해 3년이라는 단기간의 협상기간을 설정되어 있어 분야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
 - 특히 세부 협상일정이 설정된 농업, 서비스 협상의 진행속도가 빠를 것을 예상
- 협상이 2005. 1. 1 시한내 종결될 경우 협상결과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

4. DDA 관련 협상그룹회의 2002년도 개최일정

	3월 ¹⁾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TNC										
농업	26~28			24~27			23~25, 27		18~20, 22	
서비스	19~22 (7)		27~31	3~7	15~25			28~	1	9, 11~13
비농산물 시장 접근		10~11	29~30		11~12		12~13		4~6	2~3
규범	11 (7)		6~8		8~10			16~18		
환경	22 (12)			11~12				10~11		
TRIPs ²⁾	8			28			20		28	
DSU	14	16	21		15~16		10~11	14	13~15	16~18
개발		9	16	14	2, 17		16	7, 9		6
싱가폴이슈										
투자		18~19			3~5		16~18		14~15	
경쟁		23~24			1~2		26~27		20~21	
무역원활화			23~24		22~23			3~4		4~5
정부조달 투명성			31					11	11월 말 또는 12월 초	
정부조달 ³⁾			30~31					9		11

주: 1) () 내는 국내 대책회의 일정(잠정)임.

2) 6월 이후의 협상회의 일정은 미정이나, < > 내의 정례회의에 연이어 개최될 것으로 예상

3)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은 DDA 의제가 아니나, 협상시한은 DDA와 같이 2004년 말로 설정됨.

4) 기울인 부분은 보건복지분야와 관계있는 분야

II. 각료회의 결과의 의미와 향후 작업

1. 관세분야

가. 관세인하 협상

-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식품의 시장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관세율 양허안 제출 및 타 회원국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용 여부 결정
 -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입장 및 세번에 따른 양허안 검토 필요
 - 각 품목별 관세 부가를 위한 세번(HS 10자리 기준)¹⁾으로 식품 (농업 협상 1800종, 공산품 200종), 의약품(약 350종), 화장품(약 100종) 및 의료용구(약 800종)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개별 회원국이 제출한 양허안에 대한 아국 입장 점검 및 추가 양허 필요 여부 요청

나. 관련 동향

- UR당시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8개분야에 대해서는 부문별 무세화 협상이 진행된 바 있으며,
 - OECD(1997)는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포함한 일부 분야에서 부문별 관세 철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²⁾
- 우리나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가공식품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WTO내 중간 수준인 8% 균일 관세를 유지
 - 이는 미국(3.6%) 및 일본(1.7%) 등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경제수준이 비슷한 타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UR협상시 의약품, 의료기기 일부품목이 무세화 및 관세인하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의약품(HS 3003~3004)은 미양허 상태

1) HS code는 국제적으로 6자리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국이 3-4자리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4자리를 추가로 하여 총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2) OECD 데이터베이스인 OLIS의 TD/TC(97)11 참조

다. 대응 방향

- 국내 의약품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HS 3003~4류가 미양허 품목으로 남아 있고,
 - 현재 실행관세가 8%대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인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부문별 무세화나 추가적 관세인하 논의가 있을 경우 신중한 접근 필요.

2. 서비스분야

가. 서비스의 개요

- 서비스란 노동, 기술 또는 자문과 같이 인간의 수고 형태를 띤 무형의 상품 (intangible commodity in the form of human effort, such as labor, skill, or advice), 혹은 시장에서 구매 판매되는 모든 무형적 제품 또는 재화가 아닌 무형의 경제재의 생산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됨
- 서비스에 대한 단일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은 서비스가 지닌 다양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비스는 무형이거나 보거나 만질 수 없고,
 - 대개의 경우 저장이 불가능하며,
 - 대체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필요하고,
 - 생산자의 능력이나 노하우에의 의존도가 높아 품질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 등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나. 서비스의 특징

- 국제적인 서비스거래는 국경을 넘는 상품의 이동보다 복잡
 - 서비스는 전체 초국경(cross-border) 무역의 1/5을 차지
 -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어려움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함께 이동)
 - 국제화의 진전, 지식 및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 통신·운송수단 발달 등에 따라 서비스 무역이 날로 증가, 상품교역보다 증가속도가 빠름
 - 전세계 GDP의 60% 초과 : 저소득국가 : 38%, 중소득국가 : 56%, 고소득국가 : 65%
-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다양한 간접의 대상
 - 무역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 중요시장(철도운송, 건강보험 등)은 독점 공급자에게 허용, 안정적 공급 및 공익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 및 진입통제
-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은 서비스의 비교역성을 급격하게 변동
 - 원거리 건강 및 교육서비스 등 생산과 소비의 분리, 원거리에 대한 공급이 가능

다. 서비스협상의 적용대상

1)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 적용범위³⁾ :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

3) GATS Article I

1. This Agreement applies to measures by Member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rade in services is defined as the supply of a service
 - (a)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 (b) in the territory of one Member to the service consumer of any other Member
 - (c)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 (d)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presence of natural persons of a Member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3.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 (a) "measures by Members" means measures taken by:
 - (i)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and
 - (ii) non-governmental bodies in the exercise of powers delegated by centr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r authorities.

In fulfilling i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each Member shall take such reasonable measures as

-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한 서비스와 항공운송부문의 대부분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비상업적 · 비경쟁적 서비스를 의미)

※ 예를 들면, 공공보건서비스는 GATS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러한 서비스와 동시에 존재하고, 경쟁적 기초 위에서 공급되는 민간서비스는 협정이 적용

2) 서비스의 4가지 공급방식 규정(modes of supply, Article I)

-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 mode 1)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 영토에 대한 국경간 공급
-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 mode 2)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공급되는 해외 소비
-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 mode 3)
서비스 공급자가 수출시장에 법률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상업적 주재에 의한 공급
- 자연인의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mode 4)
회원국의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는 개인의 일시적 체재를 의미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공급

3) 최혜국(MFN)대우 (Article II) ④

- 최혜국 대우 의무 : 회원국은 어떤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may be available to it to ensure their observance by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ies and non-governmental bodies within its territory;

- (b) "services" includes any service in any sector except services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c) "a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means any service which is supplied neither on a commercial basis nor in competition with one or more service suppliers.

4) Article II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 With respect to any measure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Member shall accor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country.
2. A Member may maintain a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provided that such a measure is listed in, and meets the conditions of, the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so construed as to prevent any Member from conferring or according advantages to adjacent countries in order to facilitate exchanges limited to contiguous frontier zones of services that are both locally produced and consumed.

게 부여하는 최선의 대우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확대, 즉 한 회원국의 어떤 조치에 의한 혜택이 일정한 국가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전 회원국에 똑같이 베풀어져야 함을 의미함

※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원칙

○ 최혜국대우의 면제조항 (Article II.2)

- 동 조 제2항은 면제조항으로 동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⁵⁾에 기재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최혜국대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치라도 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일반 상품 교역의 경우 최혜국 대우가 어떠한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나, 서비스 협정에는 최혜국 면제조항이 들어가 있음
 - 최혜국 대우원칙은 GATT체제를 유지하는 대원칙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의 예외가 인정되는 이유는 첫째, 서비스 교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국제협정이 없었으며, 둘째, 부문별로 양국간이나 복수간 협약들만이 존재해 온 까닭에 최혜국 대우를 절대적으로 준수하는 경우 기존의 체약국들 외의 국가들은 무임승차효과를 누리게 되고 이로 인한 불공평한 교역이 야기될 가능성 존재
- 2/3 WTO 회원국은 MFN 면제를 기재

5)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Scope

1. This Annex spec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Member, at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s exempted from it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II.
2. Any new exemptions applied f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shall be dealt with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IX of that Agreement.

Review

3.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hall review all exemptions granted for a period of more than 5 years. The first such review shall take place no more than 5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4.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in a review shall:
 - (a) examine whether the conditions which created the need for the exemption still prevail; and
 - (b) determine the date of any further review.

Termination

5. The exemption of a Member from it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II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measure terminates on the date provided for in the exemption.
6. In principle, such exemptions should not exceed a period of 10 years. In any event, they shall be subject to negotiation in subsequent trade liberalizing rounds.
7. A Member shall notify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at the termination of the exemption period that the inconsistent measure has been brought into conformity with paragraph 1 of Article II of the Agreement.

Lists of Article II Exemptions

[The agreed lists of exemptions under paragraph 2 of Article II will be annexed here in the treaty copy of the WTO Agreement.]

※ 주요 면제분야 : 운송 (특히 해운), 통신 (특히 시청각), 금융, 사업서비스(특히 전문직서비스)

※ 원칙적으로 면제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대부분 면제시한을 기재하지 않거나 지속기간을 무한정으로 표시

- MFN 면제는 단지 제3조 의무의 면제만을 의미하며, 구체적 양허표 (specific commitments)에 기재된 시장접근(제16조) 및 내국민대우(제17조) 수준은 WTO 회원국에게 부여되어야 하고, MFN 면제가 상호주의 요건에 의한 양허를 축소할 수는 없음

4)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대한 구체적 약속 (Specific Commitment)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제16조)⁶⁾

- 동 조항은 각 회원국들의 국내시장접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한 사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양허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취해질 수 없는 조치들의 성격을 명시함
- 외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불문하고 양허표에 기재
- 시장접근 제한 내용 및 예시
 - (a) 수량적 쿼타,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6) Market Access (Article XVI)

1. With respect to market access through the modes of supply identified in Article I, each Member shall accord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provided for under the terms, limitations and conditions agreed and specified in its Schedule
2. In sectors where market-access commitments are undertaken, the measures which a Member shall not maintain or adopt either on the basis of a regional subdivision or on the basis of its entire territory,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its Schedule, are defined as:
 - (a) limitations on the number of service suppliers whether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monopolies, exclusive service suppliers or the requirements of an economic needs test;
 - (b) limitations on the total value of service transactions or assets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 (c) limitations on the total number of service operations or on the total quantity of service output expressed in terms of designated numerical units in the form of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 (d) limitations on the total number of natural persons that may be employed in a particular service sector or that a service supplier may employ and who are necessary for, and directly related to, the supply of a specific service in the form of numerical quotas or the requirement of an economic needs test;
 - (e) measures which restrict or require specific types of legal entity or joint venture through which a service supplier may supply a service; and
 - (f) limitations on the participation of foreign capital in terms of maximum percentage limit on foreign shareholding or the total value of individual or aggregate foreign investment.

(economic need test)⁷⁾의 형태로 부과되는 서비스 공급자의 숫자 제한

예) 인구밀도에 기초한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한 신규 식당 개설허가

(b) 수량적 쿼타 또는 ENT 요건의 형태로 부과되는 서비스 거래액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예) 외국은행지점은 모든 은행의 국내 여신을 x %로 제한

(c) 쿼타 또는 ENT 요건의 형태로 부과되는 특정 수치적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총영업량 또는 서비스 산출총액의 제한

예) 외국 영화 방영을 위한 방송시간의 제한

(d) 수량적 쿼타 또는 ENT 요건의 형태로 부과되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되거나, 또는 한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 서비스공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직접 관련된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총고용인력의 제한)

예)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노동력의 x% 초과 불가 및/또는 총임금의 y% 초과 금지

(e)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법인체나 합장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서비스 공급업체의 법인형태의 제한)

예) 상업적 주재에는 대표사무소 제외

(f)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예)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는 x% 초과 불가

7) 경제적 수요심사에 대한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설립요건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공급자의 자격과 관계없는, 공급업체수의 수요공급에 관한 특정 기준을 설정·운영하는 것과 같이 공급되는 서비스의 양, 공급업체의 수, 서비스거래의 가액등에 관하여 정부가 수요·공급을 조정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음

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제17조)⁸⁾

- 이 조항은 양허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타국 회원국들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취해야 함을 명시함
- 동 조 2항에서는 NT를 위하여 국내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취해지는 조치와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3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형식적 동일성 여부를 떠나 국내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경쟁에 유리하도록 작용할 경우 내국민대우 위배를 간주됨을 명시함
예) 관리자 및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국적 또는 거주요건, 국내통화에 의한 특정액수의 자산투자 요건,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토지매입 제한, 국내 공급자에 대한 특별보조금 또는 조세특혜, 외국인 공급자의 활동에만 적용되는 상이한 자본요건 및 특정활동의 제한 등

다.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⁹⁾

양허대상이 아닌 조치 중 추가적 약속을 기재

5) 점진적 자유화 (Progressive Liberalization)

추후의 양허내용들이 점진적인 자유화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점진적인 자유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양허표의 기재내용 및 양허표의 수정원칙을 담고 있음

8) National Treatment (Article XVII)

1. 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each Member shall accord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in respect of all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2. A Member may meet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1 by according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either formally identical treatment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to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3. Formally identical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less favourable if i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favour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the Member compared to lik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9) Additional Commitments (Article X VIII)

Members may negotiate commitments with respect to measure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not subject to scheduling under Article 16 or 17, including those regarding qualifications, standards or licensing matters. Such commitments shall be inscribed in Member's Schedule.

가. 양허표 (Schedule of Commitments)

- 양허표란 무역자유화를 위한 양허협상을 통하여 각 회원국이 구체적인 자유화 약속을 명시한 표임
- 각 회원국이 행한 구체적인 약속은 GATS 양허표상에 명기되는데, 다음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 수평적 약속 (Horizontal Commitment) : 모든 서비스 분야 적용
 - 분야별 약속 (Sectoral Commitment) : 특정한 서비스 분야 또는 업종에 대해 적용됨
- 양허표 양식

분야 또는 업종 (Sector or Subsector)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Limitation on Market Access)	내국민대우에 대한 접근 (Limitation on National Treatment)	추가적 약속 (Additional Commitment)
서비스 공급형태 국경간 이동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 서비스 무역의 4가지 양태에 사용될 수 있는 양허약속의 성질

유 형	성 질	표 시 방 법
완전자유화 약속 (full commitment)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제한 없음 (None)
부분 자유화 약속 (commitment with limitation)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하고 더 이상의 다른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	제한 또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약속(양허)하지 않음 (no commitment)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를 규율하는 규칙에 위반되는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경우	비양허 (Unbound)
기술적으로 약속이 불가능함 (no commitments technically feasible)	특정 공급형태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Unbound*라고 표시하고 주석에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 결여로 비양허” (Unbound due to lack of technical feasibility)이라고 표시

6. 서비스 협상 현황

가. UR당시의 서비스 협상

- 160개 하위분야 기준 양허현황
 - 20개 이하 양허국 : 44개국(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 21~60개 양허국 :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필리핀 등 47개국
 - 61개 이상 양허국 : 호주, 한국, 일본, 미국, 홍콩, 태국 등 45개국
- ※ 한국 : 보건의료분야 양허 없었음. Cf. 보험업(life insurance)

나. 협상 분류코드(W/120)

대 분류	하 위 분류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h. 의료 및 치과서비스 (CPC 9321) j. 조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준의료인서비스 (CPC 93191)	
4. 유통서비스	A. 위탁대리인 서비스 (CPC 621) B. 도매거래 서비스 (CPC 622) C. 소매 서비스 (CPC 631+632, 6111+6113+6121)	
7. 금융서비스	A.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CPC 812**) a. 생명, 사고 및 건강보험 서비스 (CPC 8121)	
8. 건강 관련 및 사회서비스 (1.A.h-j에 열거 되지 아니한 것)	A. 병원서비스 (CPC 9311) B. 기타 인간건강 서비스 (CPC 9319 other than 93191) C. 사회서비스 (CPC 933) D. 기타	

다. 주요 예상 논의사항

-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request가 제출(2002. 6.30)되어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 사항 유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수평적 issue와 MFN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 '02년 2월 개최된 WTO/GATS 설명회에서는 2002.6.30일 이후에도 request의 추가 제출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일차 시한인 6.30일을 지켜줄 것을 당부

※ 금융, 운송, 전문(법률, 회계, 컴퓨터), 건설, 유통, 교육, 에너지, 환경, 오락, 관광 서비스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중이나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음.

-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s)으로 인식하고 공익성이 매우 강함
 - 많은 국가들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특히 의료인력의 양성, 의료기관의 개설,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가 수반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개방된 시장환경 속에서 공공 서비스의 지위 저하 우려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양허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임
 - 따라서 금번 서비스 협상의 범위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시급
 -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서비스 교역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 가능
 - Mode 2의 경우 이미 세계적으로 완전양허 비율이 높음
 - 서비스의 교역 차원에서는 기업내 이동을 위한 Mode 1과 Mode 3이 우선 논의되어 질 것으로 보임
 - 양허 비율이 가장 낮은 Mode 4¹⁰⁾의 경우는 금번 서비스협상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
- ※ 개도국은 Mode 4에 의한 서비스 순수출국, 선진국은 순수입국

10) Mode 4(인력 이동)

- 인력이동의 경우는 현재 다른 형태의 서비스 교역에 비해 각 국이 훨씬 제한적으로 양허하고 있음
 - 이는 서비스분야에서 인력이동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나 공통의 규율 제정 곤란
 - 각 국이 가지고 있는 이민, 입국 및 체류, 취업, 대외관계상의 현행 제도들이 역사적 배경에서나 현실적 운용에서 매우 다양하여 각국이 나서서 먼저 개방적 정책을 취할 필요나 여건이 취약
- 서비스 협상의 여러 분야 중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이 분명한 사안으로, 향후 개도국들의 인력 이동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인력이동은 서비스교역의 네 번째 공급형태로서 법인(Legal Person)이 아닌 자연인(Natural Person)의 이동에 국한되는 문제이면서도 각 서비스 분야에 모두 걸쳐지는 포괄적인 사안임
- GATS내에서의 인력이동의 문제는 노동력의 영구적 이동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Fixed term) 안에 해당 국가의 출입국 관리상의 규제를 받는 일시적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므로, 이민(Migration)과는 구분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노동이동(labor migration)과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음

○ Mode별 예상 협상 내용

서비스 교역의 유형	의료서비스 교역의 유형	의료시장 개방수단
국경간 공급	원격의료(tele-medicine)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진료 허용,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해외소비	환자의 해외진료	해외진료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인정
상업적 주재	국내 의료시설, 약국, 의약품 도·소매업, 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완전허용 - 영리법인 인정 - 법인(체인)약국 설립
자연인의 이동	외국 의료인의 의료서비스 제공	면허의 상호인정

○ 직능별 예상 협상 내용

분야	국경간 이동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이동	비고
의료 (의사, 병원)	○	○	○	○	국경간 이동: consulting
의료 (한의사, 병원)	○	○	○	○	국경간 이동: consulting
의료 (간호사)			○	○	
기타의료 (조산사 등)			○	○	
유통 (약품·한약)	○	○	○	○	
유통 (식품)	○				
접객업 (식품)					
복지 (노인, 아동)	○	○	○		
안경사			○	○	
R&D			○		
기타					WTO 협의중

○ : 고려 필요

공란 : 기개방, 미규제 또는 검토필요성이 낮거나, 추가확인 필요한 분야

III. 추진 일정 및 계획

- 2002. 6월 하순 : 외교통상부가 우리정부 양허요구안을 WTO 사무국에 송부(기한 6.30)
- 2002. 6. 26. :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 2002. 7월 중순 : 대외경제장관회의
- 2002. 6. 30~2003. 3 : 각 국별 양허요구안에 대한 양자협상
 - 2002. 7. 15~7. 26 : 제14차 WTO 서비스이사회
(동 기간중 양자협상 실시)
 - 2002.10월 : 제15차
 - 2002.12월 : 제16차
- 2003. 3. 30 : 서비스부문 양허안 마련
- 2003. 9 : 제5차 WTO 각료회의(2003. 9.10- 9.14) 개최전까지 협상 진전 사항 점검 및 우리입장 정리
- 2005. 1. 1 :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완료.

(붙임 자료 1)

보건서비스 분야 미국, 일본, EU 양허표 내용

	1)국경간 공급	2)해외소비	3)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주재
미국	Unb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미국내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비용상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제한(의료시설,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량제한.) · 일부주의 주적(州籍)요건(미시간주, 뉴욕주) 	Unbound
일본	Unbound	Unb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제한(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면허수 제한) ·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없음. 	Unbound
EU	Unbound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설립 사전허가 요구(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인구비율대비) · 수량제한(7개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영국-침상수, 고가장비, 병원수 등) · 외국인 경영자 사전허가(1개국;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의 시장접근에 대한 국적요건 (4개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 의료인의 내국민대우 부여시 거주요건(2개국; 덴마크, 아일랜드). · 약사에 대한 국적요건 (4개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소 및 노인복지시설 설립시 사전허가 요구(프랑스) · 외국인의 복지시설 운영시 사전허가 요구(프랑스) 	

(붙임 자료 2)

보건의료서비스 중국 양허표 내용

Sector or subsector	Limitation on market access	Limitation on national treatment	Additional commitments
h. Medical and Dental services (CPC 9312)	<p>(1) None</p> <p>(2) None</p> <p>(3) Foreign service suppliers are permitted to establish joint venture hospitals or clinics with Chinese partners with quantitative limitations in line with China's needs, with foreign majority ownership permitted.</p> <p>(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and as follows: Foreign doctors with professional certificates issued by their home country shall be permitted to provide short-term medical services in China after they obtain license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The term of service is six months and may extend to one year.</p>	<p>(1) None</p> <p>(2) None</p> <p>(3) The majority of doctors and medical personnel of the joint venture hospital and clinics shall be of Chinese nationality.</p> <p>(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p>	

- 합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을 허용하되 필요시 합자 의료기관 수자 제한이 가능
 -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합자의료기관의 영리 경영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외국인 의사는 위생부 허가증 취득 후 중국에서 단기적 (6~12개월)으로 의료 활동 가능 (의사 및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로 구성)

(붙임 자료 3)

WTO DDA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 현황

관련법	규제내용	비 고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등 행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 유형 : 금지 - 근거법령 : 의료법 제25조 제3항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자원과 구강보건과 한방의료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의료면허 소지자가 의료법인에서 의료행위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 유형: 승인 - 근거법령: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구강보건과 한방의료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의 2개소 이상 의료기관 개설제한(1의료인 1의료기관 개소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 유형: 기준설정 - 근거법령: 의료법 제30조 제2항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의료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형태 이외의 개설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 유형: 허가 - 근거법령: 의료법 제30조 제2항 - 관계기관: 국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 	보건의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의료(의료인과 의료인간에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유형 : 기준설정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0조의2 - 관계기관: 국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 	보건의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의료법인의 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조산원 - 유형: 금지 - 근거법령: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법	규제내용	비 고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면허 시험 축득 자격 (외국 의료교육기관 졸업 후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에 국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유형: 기준설정 - 근거법령: 의료법 제5조 제3항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자원과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개설등록조건(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소지자만의 약국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약사, 한약사 - 유형: 허가 - 근거법령: 약사법 제16조 제1항 - 관계기관: 기타(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개설등록 등) 	약무식품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개설장소 제한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의료 기관내 외래약국 개설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약사, 한약사 - 유형: 허가 - 근거법령: 약사법 제16조 5항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의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 및 약국개설자만의 약국관리(약국의 관리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약사, 한약사 - 유형: 의무 - 근거법령: 약사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관계기관: 기타 	약무식품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약학전공 대학 졸업자의 국내 면허자격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전공 대학 졸업 후 해당국가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약사 - 유형: 기준설정 - 근거법령: 약사법 제3조 제2항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국민건강 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기관 강제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직종 및 단체: 의료기관(의원, 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유형: 의무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4항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붙임 자료 4) WTO 개요

1. WTO 체제의 출범

- 1994. 4. 12~15일 모로코 마라케쉬(Marrakesh)에서 개최된 우루과이 라운드 각료회의를 끝으로 1995. 1. 1.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로 출범
 - 1986. 9. 15~20 우루과이의 푸타델에스테 (Punta Del Este)에서 출범 하여 7년반 동안 끌어온 우루과이 라운드의 공식적 마무리
 - 1948. 1. 1.부터 47년간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 오던 GATT체제 종식.
 - 현 회원국 : 144개국
- WTO 체제는 이전의 GATT에 비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그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되었고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국가간 무역관계를 관리

	GATT 체제	WTO 체제
시장개방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인하에 주력 ○ 비관세장벽은 동경라운드에서 철폐노력, 그러나 선언적 규정 정립 수준에서 실효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무관세도입으로 관세율의 하향평준화 달성 ○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강화 (모든 회색조치를 4년내 폐지)
관할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주로 공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외에 농산물에 대한 규율도입 (다자간 섬유협정(MFA)도 WTO로 흡수)
신분야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체정 ○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범체정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규범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정의 등 불명료 ○ 반덤핑 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강화 (금지, 상계가능, 허용보조금 등의 구분) ○ 반덤핑 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의 명료화로 남용방지 ○ 세이프가드 협정, 원산지규정, 선적적 검사 협정 등을 새롭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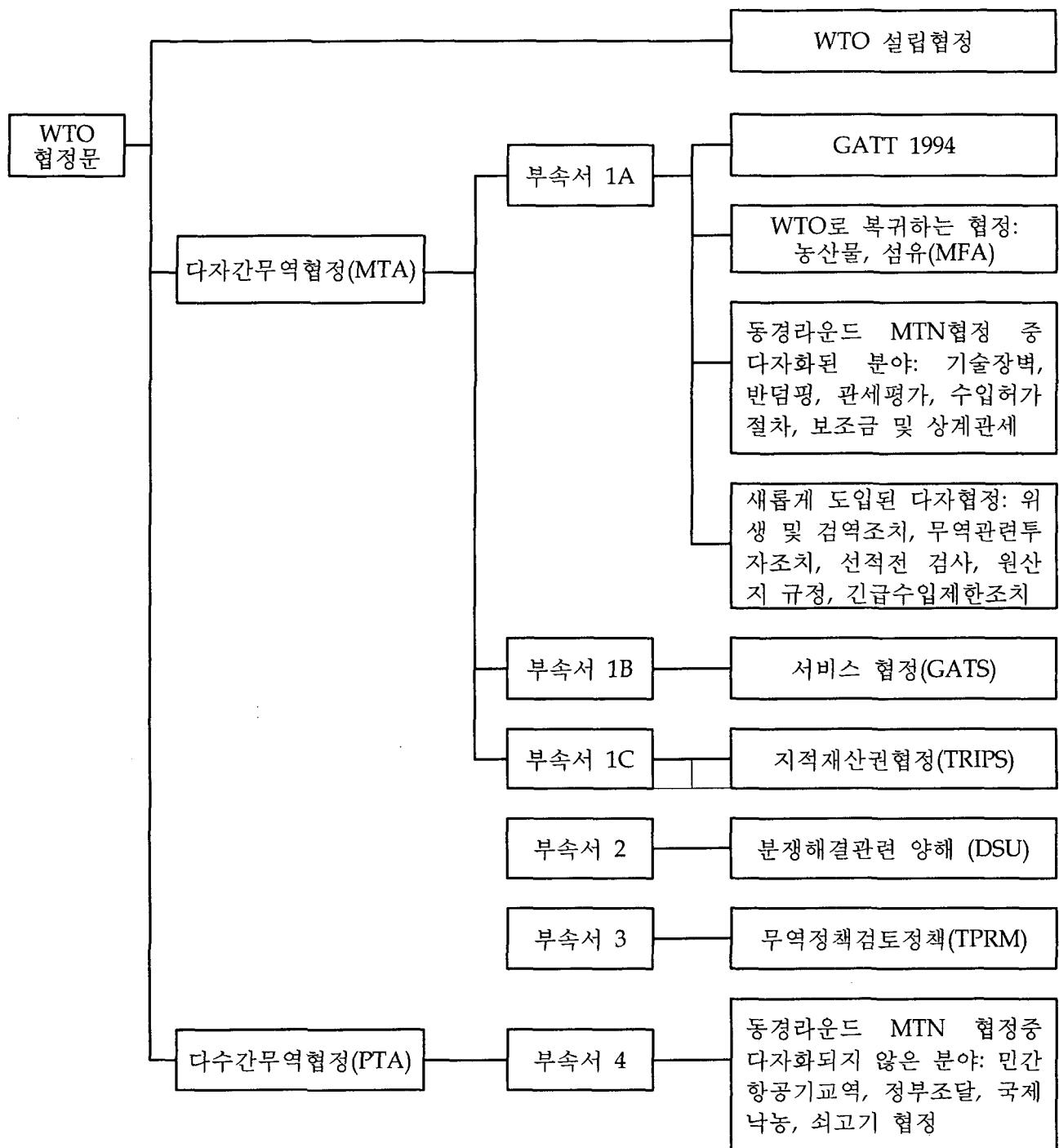
자료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pp. 24, 1994. 7.

〈 표 1 〉 GATT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 협정 대상범위의 확대 : GATT가 상품분야만 다루었던 것에 반해, WTO는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을 포함.
- 규범의 명료화 : GATT가 매우 단순한 GATT협정 규정과 여러 결정이나 선언 등에 의존하여 규정상의 미비 또는 불명확으로 인하여 국내제도의 실행과 해석상의 차이로 마찰이 자주 발생한 반면, WTO에서는 반덤핑협정을 비롯한 여러 개별 협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GATT규정을 구체화하고 규범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방지.
- 자유무역의 강화 : GATT체제하에서 심각한 무역장벽이었던 비관세 장벽 대거 제거, 관세 수준도 크게 감축, 국제무역 전반에 걸쳐 개방과 자유화의 기조 강화
- 무역기구의 기능확충 : 신속한 의사결정(회원국간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 표결, 의사결정시한 엄격히 설정), 분쟁해결능력 강화(분쟁해결기구 설치, 상소제도 도입), 정책적 협력강화(모든 회원국의 무역 관련 정책, 제도, 관행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평가)
-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 국제금융에서의 IMF, IBRD처럼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능력을 갖춘 국제기구가 다자간 무역관계를 주관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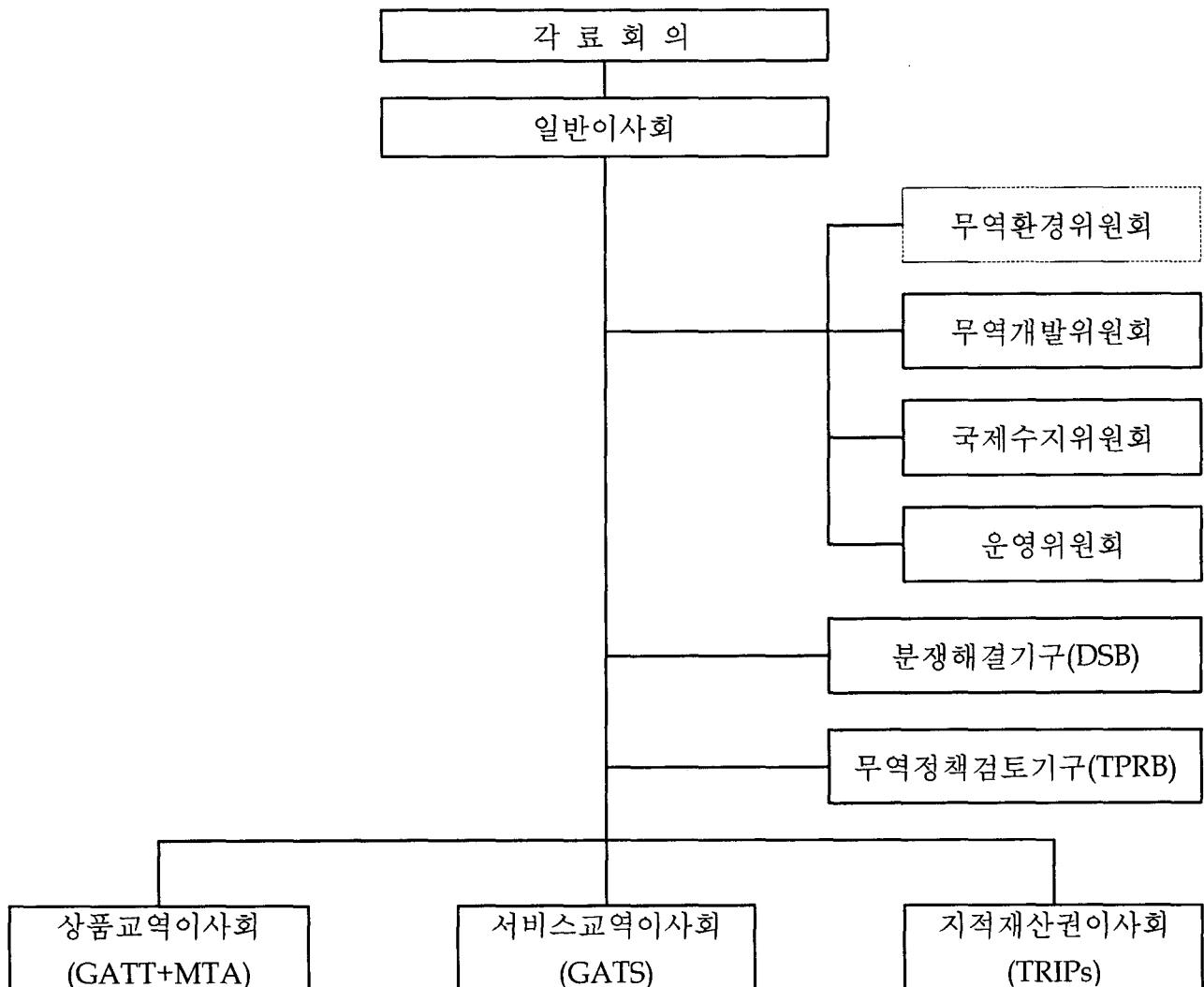
2. WTO 협정문의 구성

- WTO 협정문의 구성은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WTO 설립협정과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동경 MTN 협정, 새로운 다자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관련 양해, 무역정책 검토제도, 다자간 무역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표 2 〉 WTO 협정문의 구성

3. WTO 조직 구성 및 기능



〈 표 3 〉 WTO 조직의 구성

○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 WTO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 모든 회원국의 대표(예 : 각 국 통상장관)로 구성, 2년에 1번 이상 개최
 - 제1차 WTO 각료회의 : 1996.12. 싱가폴
 - 제2차 WTO 각료회의 : 1998. 5. 스위스 제네바
 - 제3차 WTO 각료회의 : 1999.12. 미국 시애틀
 - 제4차 WTO 각료회의 : 2001.11. 카타르 도하
 - 제5차 WTO 각료회의 : 2003. 9. 멕시코 칸쿤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 각료회의의 비회기 기간 중에 필요시 개최되므로 실질적을 각료회의 일정을 수행하는 상설기구 역할 담당
- 일반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DSB)의 임무 또는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됨

○ 분과이사회

- 일반이사회 산하에 분야별로 상품교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서비스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개 이사회 설치
 - 상품교역이사회 : WTO협정서 부속서1A(GATT 1994+대부분 MTA)
 - 서비스교역이사회 : WTO협정서 부속서1B (GATS)
 - 지적재산권이사회 : WTO협정서 부속서1C (TRIPs)
 - 분쟁해결기구 : WTO협정서 부속서2 (DSU)
 - 무역정책검토기구 : WTO협정서 부속서3 (TPRM)
- 필요시 개최

○ 위원회(Committee)

- 각료회의 산하에 '무역과 환경', '무역과 개발' 등 5개 설치
- 상품무역이사회 산하에 '시장접근', '농업', SPS, TBT 등 12개 설치
- 서비스무역이사회 산하에 '금융', '특정양허' 2개 설치

○ 사무국(Secretariat)

- 세계무역기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행정관리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 소재